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 기 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65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에 병물 아리수 생산 시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제한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통한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환경 보전 및 생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조례의 제명을 ‘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병물 아리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’로 개정하고, 병물 아리수의 정의 및 음수대의 설치·보급 및 음용을 촉진하고 병물 아리수의 공

급 및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는 내용과 함께 추진계획의 수립
· 시행 중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
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
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
다.

감사합니다.